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2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

찬 성 자 : 장상기·문장길·이정인·우형찬·  
김혜련·이영실·김희걸·경만선·  
이광호·이광성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대상지주변 필지의 주민들이 입안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주민의견 청취기준을 강화하여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주민의견 청취 시 대상지 인접대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(세입자 포함)에게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
2. 도시관리계획 입안·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
3.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56 365 427 405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data-bbox="256 573 427 613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data-bbox="256 781 568 822">② ~ ⑥ (생략)</p>	<p data-bbox="857 365 1394 539"><u>2. 도시관리계획 입안·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</u></p> <p data-bbox="857 573 1394 748"><u>3.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</u></p> <p data-bbox="857 781 1262 822"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,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까지 우편 발송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추가되는 우편 통보 대상자는 사업대상지의 규모, 인접필지의 크기, 인접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상황, 소유자나 세입자의 과소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어림잡을 수 없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     이정수

예 산 분 석 관      한기백

☎ 02-3705-1284

e-mail : hophan@seoul.go.kr